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 5. 1(화)

조례안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목

【 목 차 】

1.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3.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안번호 제2007 - 6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4월 23일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산림환경과)
- 다. 회부일자 : 2007년 4월 24일

II.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대상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상 사업자를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2호)
 -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IV. 검토의견

가. 동 조례안은

-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대상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 2005. 12.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감량대상 사업장 지정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 안 제2조(정의) 제2호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를 검토한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 사업장의 영업장 기준면적을 기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일괄적인 면적 제시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한 입법취지를 볼 때,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서는 영업장의 면적을 기존 규칙에 규정한 것과 똑같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렇게 규정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로 규정하게 되면 우리 군 관내 총업소수 1,132개업소중에서 8.9%인 101개업소만 해당되며, 휴게음식점은 대상 업소가 1개소도 없는데 이렇게 규정해도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면적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관내 업소별 현황

구 분	총업소수	125㎡이상업소	비 율
계	1,132	101	8.9%
일반음식점	1,024	101	9.8%
휴게음식점	108	0	0%

-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2005. 12. 30 개정되어 그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2007. 1. 1부터 시행토록 한 것으로 시행일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여,
- 이로 인해 감량화 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할 음식점이 관련규정의 부재로 감량화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는 2006.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통보한바 있으며,

2007. 4. 9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상사업장 관련 조례 제·개정 촉구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늦어진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령명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 표시 등 자구를 정리한 사항이며, 지난 3. 26부터 4. 17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V.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2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7. 3. 26 ~ 4. 17(20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 : 별도의견 없음

《참 고 자 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 한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제22조 제5항

①~④항 생략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의안번호 제2007 - 7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4월 23일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도시건축과)
- 다. 회부일자 : 2007년 4월 24일

II.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 변경 절차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안 제1조 등)
-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관한사항(안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안 제32조 내지 안 제37조, 안 제43조, 안 제48조, 안 제49조, 안 제51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안 별표 1 내지 별표 23)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함(안 제73조)

IV.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 5. 8, 2006. 8. 17 개정·공포되고,
- 건축물의 용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고, 동 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9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관련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은 모두 3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며

다만, 단서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써 규정토록 하고 있음.

- 이는 허가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안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은 “5천 제곱미터”를 “1만 제곱미터”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를 “1만5천 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 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판단됨.

○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입법취지와 다른 시·군에 규정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아래 표 참조)

※ 19조 관련 시·군별 개발행위허가규모 규정 현황

시군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고
창원시	5천㎡	1만㎡	3만㎡	1만㎡	
함안군	5천㎡	1만㎡	3만㎡	1만㎡	
남해군	1만㎡	2만㎡	3만㎡	2만㎡	
하동군	1만㎡	2만㎡	3만㎡	3만㎡	
함양군	5천㎡	1만㎡	3만㎡	1만㎡	
산청군	5천㎡	3만㎡	3만㎡	3만㎡	
합천군	1만㎡	2만㎡	3만㎡	2만㎡	
거창군	1만㎡	1만5천㎡	3만㎡	1만㎡	개정안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발취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먼저, 종전의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용도를 보면(법률 제36조 참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동일수준의 지역이며,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은 수준의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허가규모도 같은 수준으로 규정해야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생산관리지역은 1만5천 제곱미터로 농림지역은 1만 제곱미터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보전관리지역을 5천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허가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전관리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때, 보다 신중하게 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19조 수정의견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생략) 1. 보전관리지역 : <u>5천제곱미터</u>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u>1만제곱미터</u>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u>3만제곱미터</u> 미만 4. 농림지역 : <u>1만제곱미터</u>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현행과 같음) 1. 보전관리지역 : <u>1만 제곱미터</u>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u>1만5천 제곱미터</u> 미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현행과 같음) 1. 보전관리지역 : <u>5천 제곱미터</u>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u>2만 제곱미터</u> 미만 3. 현행과 같음 4. 농림지역 : <u>2만 제곱미터</u> 미만

⇒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5천 제곱미터로 그대로 두고,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유치 등 개발 촉진을 위해서 좀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28조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련하여》

- 본 조례 제28조는 일정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자문을 받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로서,
- 개발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모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게 할 경우, 민원처리의 지연과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감사원의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며,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개정 시 모두 삭제한 내용임.

안 제28조 수정의견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생략) 1. ~ 3. (생략) 4. 경사도 <u>20퍼센트</u> 이상 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18도</u>	제28조 <삭제>

《 안 제73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관련하여 》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에 대하여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하였으며,
-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당초 21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세분화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주요 변경내용

□ 변경개요 : 21개 항목 ⇨ 27개 항목으로 세분화

□ 변경(세분화) 주요내용

당 초	변 경	비 고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 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변동 없음
5. 문화 및 집회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세분화
6. 판매 및 영업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세분화
7. 의료시설	9. 의료시설	변동 없음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운수시설	세분화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자동차 관련시설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 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변동 없음
19. 공공용 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세분화
20. 묘지관련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변동 없음

다. 마지막으로

-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2007. 4. 19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는 없음.

V.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불요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07. 3. 21 ~ 4. 9(20일간)
- 방 법 :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 : 별도의견 없음

《참 고 자 료》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 ① ~ ② (생략)

③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자동차관련 시설군 / 2. 산업등 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 5. 영업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⑤~⑦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용도변경) ① 삭제 <2006. 5. 8>

② 삭제 <2006. 5. 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이라 함은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6 .5. 8>

⑤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78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4>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별표 25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91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6과 같다.

부 칙

제13조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기원
-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 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 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 사. 삭제 <2006.5.8>
-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 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탁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삭제 <2003.2.24>
-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 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제조소
- 라. 위험물저장소
- 마. 위험물취급소
- 바. 액화가스취급소
- 사. 액화가스판매소
-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 군사시설
- 라. 삭제 <2006.5.8>
- 마. 삭제 <2006.5.8>
- 바. 삭제 <2006.5.8>
- 사. 삭제 <2006.5.8>
- 아. 삭제 <2006.5.8>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장
-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의안번호 제2007 - 8호>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I.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4월 23일

나. 제출자 : 거창군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회부일자 : 2007년 4월 24일

II.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06.5.30)개정에 따라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전·평시 작전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각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 추가와 상위법 개정으로 중복내용을 삭제함 (안 제2조)
-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거창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안 제3조 제2항)

- 상위법 개정으로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변경함
(안 제4조 제6항) - 총괄지원반 등 7개반
-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정비(안 제 5조 제2항)
- “이동식 장애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기타 조문의 신설 및 삭제로 체계에 맞지 않는 각 호의
순서를 재배열함.

IV.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거창
소방서장의 당연직 위원 위촉과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추가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 안 제2조(심의사항)에서 “제1항 통합방위대비책”과
제3항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의
신설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정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정비한 사항이며,
심의사항 중 “취약지역대비책”의 삭제는 법 제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포함되어 운영할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항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 변경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유사 지원반의 통폐합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항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8조(취약지역대비책 기준 개선)에 근거하여 “이동식 장애물”의 세부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따라서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V.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참 고 자 료》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06.3.3>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1999.3.31, 2006.5.30>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지방소방관서의 장
12.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⑤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⑥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30>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③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④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내에 두도록 한다. <개정 2006.5.30>

제28조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30, 2006.5.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의 경우 평시에 이를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